

지방세 감사사례(I)

김 영 철

행정자치부 세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1. 총 칙

(1) 국세기본법에 상치되는 자치법규 정비 소홀

지방세법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지방세부과·징수의 기준법이고, 지방세의 과세요건은 조례 등 자치법규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제·개정하거나 운영함에 있어 엄정한 정비와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도세조례시행규칙(개정2001.8.13 규칙 제2975호) 제82조 제5호 가목의 규정에 「도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였을 경우에 국세 또는 공공단체의 공과금의 교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과의 채무액에 우선하여 도세, 기타공과금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강제집행비용에 충당하고 그 다음에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교부하고 그

다음에 채권액에 충당한 금액을 교부한다」는 국세 기본법 제36조제2항의 규정과 상치되고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고 있는 규정으로써 자치법규 정비와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음.

(2) 지방세법개정내용 미반영 등 자치법규정비 지도·감독 소홀

□□도 세정과는 시군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업무분장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지방세법 3장 4절의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정하여 2001. 1. 1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나, □□도 ○○시의 11개시군은 2002. 4. 8 현재까지도 지방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시·군세 부과징수규칙 중 종전의 “농지세”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치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에 소홀한 점이 있음.

(3) 도세조례 및 부과징수규칙 정비 소홀

지방세법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지방세 부과와 징수의 기준법이며 실제로 자치단체가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지방세의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 등 과세요건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제·개정하거나 운영함에 있어 엄정한 정비와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도는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토록 규정하고 과세대상이 아닌 군납업의 등록세율을 그대로 존치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에 소홀한 점이 있음.

(4) 도세부과징수규칙 정비소홀

☆☆도 자치재정과는 ☆☆도도세부과징수규칙 제152조 내지 제153조의 내용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경주·마권세”가 “레저세”로 세목변경 및 과세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개정하지 아니하므로써 자치법규 정비를 태만히 하였으며, 동규칙 제80조(공매공고)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34호의 서식에 따라 공매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공매공고 내용은 지방세법 제82조(국세기본법률의 준용)에 근거한 국세징수법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도세부과징수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은 공고내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잘못된 자치법규를 정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실이 있음.

(5) △△시세조례 및 부과징수규칙 정비 소홀

△△시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 후 자치센터에서는 “시세완납증명서 및 시세미과세 증명서발급”사무만 시 사무위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세조례 및 부과징수규칙은 지방세 부과징수사무까지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서 처리하도록 위임 규정을 두어 현실에 맞지 않는 점 등 자치법규 개정 및 운영에 미흡한 점이 드러남.

(6) ○○광역시○구세감면조례 등 정비 소홀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3호(다)목의 개정(2000. 1. 12 법률6162호, 2000. 8. 1부터 시행)으로 “음성나환자”가 “한센환자” 등으로 개정되어 ○○광역시에서 2001. 12. 21 ○구청장에게 개정지시(세정13400-1061호)를 하였음에도 2002. 9. 2 현재까지 ○○광역시○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광역시○구세부과징수규칙 제66조(공매공고)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35호의 서식에 공매공고 내용을 규정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에 근거한 국세징수법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광역시○구청장은 국세징수법령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규정(별지

제35호 서식내용 중 “개찰희망자”를 “입찰희망자”로 개정해야 함)하고 있어 공매 입찰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에도 자치법규를 정비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음.

(7) 지방세운영지침 및 새로운 유권해석 전파 소홀

□□광역시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중요한 새로운 행정자치부의 세법해석 및 지침(자동차 종별구분 변경등록시 등록세 적용요령 행정자치부 세정13430-53, 2001. 1. 10,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관련 고시 행정자치부 세제 13400-7, 2001. 1. 3, 등록세관련 질의회신 사례 송부 행정자치부 세정13407-1270, 2000. 11. 4, 유동화자산의 취득등기시 지방세 감면요령 행정자치부 세정13430-1219, 2000. 10. 19, 지입화물 운수회사간 사업양도·양수시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 행정자치부 세정13407-1164, 2000. 10. 5)등이 통보되어 왔음에도 사실상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관할하는 구·군에 현재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지방세정 운영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8) 과오납 발생원인의 분석소홀 및 집계관리 부적정

지방세법 제4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 추진계획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그 이자는 지

체 없이 환부하여야 하며 과오납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음.

△△도의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 추진계획 자료(2001. 9)에 의하면 과오납 발생건수가 1999년은 54,794건, 2000년 77,457건, 2001. 10월말 현재 72,308건으로서 과오납 발생이 감소되지 않고 있으며 과오납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시정하는 노력이 미흡하고 환부처리절차가 비효율적임. 참고로 ○○시의 과오납 관리실태를 보면, 세목별로 업무담당자가 과오납을 처리하기 때문에 동일 건에 대해 세목별 환부일자가 다르고(예시 : 차량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지방교육세) 발생건수를 각각 집계(예시 : 종합토지세의 경우 종합토지세·농어촌특별세·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함으로써 과오납 발생이 과다하다는 오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중납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납세자에게 감면에 대한 안내나 홍보를 하여 사전에 감면해당여부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과오납이 사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환부에 따른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고, 또한 과오납 발생원인을 과세기관착오, 납세자착오, 국세경정에 따른 발생 및 법원판결 등에 따른 발생으로 구분하고 발생원인별로 구체적인 분류를 함으로써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을 집중 분석하여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됨.

(9) 엘리베이터 설치 건물에 대한 가산율 적용 부적정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와 ○○시 건물시가표준액 결정자료에 의하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15/100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 △△구, □□시 ○○구와 ××구, ◇◇시 ◎◎와 ××구에서는 강○○가 보유하고 있는 ○○시 △△구 △△동 962-6번지 상 건물 등 10건의 건물에 대하여 엘리베이터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을 과소 부과(17,918,790원)한 사실이 있음.

또한 ○○광역시 ×구·△구·□구에서는 심××이 소유하고 있는 △△동 826-6번지 상 건물 등 8건의 건물에 대하여 엘리베이터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 (5,407,090원)을 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음.

(10) ○○도도세감면조례에 의거 감면을 받은 차량에 대하여 그 고유목적외에 사용시 추정 근거 조항 누락

△△도도세감면조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자가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

는 이전등록하거나 할부판매 등의 사유로 저장권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으로 하며,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으로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음.

위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을 감면하여준 후에는 이를 그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지의 실태를 조사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추정하여야 하나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추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11) 도세부과징수등 지방세업무 지도감독 소홀

△△도도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위임받은 도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과 도세 및 가

산금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면·동장(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시·군사무위임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시는 도세의 부과정수에 관한 사무를 3개구청(○○·△△·××구)에 위임하여 처리하면서 도세를 비롯한 지방세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함에도 구청별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도감독에 소홀한 점이 있음.

××구청의 경우 수기분 등록세 납부서의 전산입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산세 부과대상이나 정률세 납부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으며, △△구청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에 대한 등록세수납사항처리부의 전산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여 대사확인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보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3개 구청의 면허세 과세자료관리 실태를 보면 구청별로 과세자료를 각각 파악함으로써 보험업의 경우는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등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12) 공사대금 및 보상금 지급시 지방세 체납여부 미확인

지방세법 제38조와 제82조 및 국세징수법 제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금을 지급하는 주무관서 등은 세무부서에 조회하여 그 체납사실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도 ○○시, ××시, □□시에서는 2000~2001년에 지급한 각종 대금에 대하여 납세자별로 세무부서의 지방세 체납액유무를 확인한 결과 ○○○ 등 50인의 지방세 체납액 13,362,240원을 징수하지 않았음.

(13) 지방세체납자 관허사업제한 미이행

지방세법 제4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광역시 △구 지방세과에서 △구 건설과, 지역경제과, 건축허가과, 문화공보과, ××광역시 교통지도과·도시미관과 등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하였으나 각 주무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지방세과에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도 ○○시장은 세무13400-12858 (2001. 11. 15)호로 교통행정과에 지방세 체

납자에 대한 자동차관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요구를 하자, 교통행정과에서는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하여 2002. 4. 30까지 완납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등을 조치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상의 규정을 미온적으로 처리.

(14)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불이행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세무공무원)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광역시 △구·◎◎구·◇◇구청장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소홀히 하고 지방세 납세의무의 강제조치 등 법정이행조치를 태만히 하였음.

(15) 과세권자의 지방세 고질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소홀

지방세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자가 주소, 거소, 영업소 불명, 화재, 전화, 도난 등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그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 요구할 수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위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교통과, 산업관광과)는 ○○구청장과 ××구청장의 3회 이상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정지·취소요구 의뢰를 공문으로 접수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

(16) 도로개설보상금 지급시 지방세 체납여부 미확인

지방세법 제38조와 제82조 및 국세징수법 제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금을 지급하는 주무관서 등은 세무부서에 조회하여 그 체납사실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구에서는 ○○권 광역상수도사업과 도로개설 등을 하면서 125,044백만원을 보상금 등으로 지급하면서 지방세 체납사실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음.

(17) 납세의무자의 압류사유 소멸에 따른 압류 해지 지연

지방세법 제28조와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지정한 기일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하며, 압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시 ○○구에서는 체납액 완납자 김○○외 5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함에 있어 최소 2개월 27일부터 최장 10개월 20일까지 지연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 행사를 저해하는 사례 발생.

(18) 경매부동산 등 체납액 징수자료 협조체계 미흡

지방세법 제82조와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원에서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경우 경락기일 종료시까지 당해 집행법원에 체납된 지방세의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나, △△지방법원에서는 부동산 경매시 해당 부동산 소재지 구청에 경락기일 통지서를 통보함에도 불구하고 △△시의 경우 각 구청간의 업무협조가 미흡하여 △△시 ××구에서는 2001. 1. 1부터 2001. 10. 26 까지 경매물건 273건에 대한 체납액 377,677,817원을 배당 받았음에도, 같은 시 ○○구청은 동 물건에 대한 경매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273건 중 체납액이 발생한 25명의 체납세 9,399,680원을 교부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9) 고질체납차량 정리추진 미흡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소대책」 지침에 의거 행불, 무재산 등 고질체납차량에 대하여는 고지유예,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정리를 추진하도록 각 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으나, △△시 ○○·××구청은 행불·무재산·부도·파산 등 10회 이상 고질체납차량을 정리함에 있어 이들 차량은 처음부터 송달불능이 예견됨에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고지하여 고지서가 반송되자 이를 공시 송달하는 등 행정력 낭비는 물론 체납액을 누증시키는 등 고질체납차량 정리 추진에 미흡함.

(20)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미이행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납기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도 ○○시에서는 체납자의 재산보유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재산압류조치를 하지 않거나 지연시킴으로써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1) (주)△△테크노밸리 취득세 등 부과경정결정 부적정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기 위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이 선행되고 차후 부동산을 취득해야 당해 부동산이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그런데, (주)△△테크노벨리는 토지취득(2001. 3. 30) 후 사업시행자로 지정(2001. 5. 15)을 받았으므로 토지취득일 현재에는 사업시행자가 아니어서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구청에서 취득세 등 317,054,050원을 적법하게 부과지하였음.

이에 2001.10.23. (주)△△테크노벨리가 동 법인의 주주인 ○○광역시·○○은행·(주)○○간에 감면확대를 위하여 상호노력한다는 주주간 맺은 협약을 근거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광역시장은 이 협약을 근거로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여 2001. 12. 28. 취득세 160,000,000원, 등록세 117,545,050원, 농어촌특별세 16,000,000원, 지방교육세 23,509,000원, 합계 317,054,050원 중 농어촌특별세 16,000,000원을 32,000,000원으로 한 세액과 등록세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23,509,000원을 합제한 농어촌특별세 55,509,000원으로 경정결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 결정하였음.

일반적으로 조세행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권자가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이를 신뢰한 납세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 것(대법원 94누12159, 1995. 6. 16)이 일반적인 의견인 바, 토지취득이전에 사업시행자지정을 받지 아니한 귀책사유는 (주)△△테크노벨리에 있고, 법인내부의 주주간 협정은 사

인간 약정에 불과할 뿐 과세기관이 공적으로 납세자에게 견해표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음.

한편, 지방세의 감면은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자치단체지방세감면조례에 근거하여야 함에도 ○○광역시장의 자의적 법령해석과 주식회사의 주주간의 지방세감면노력이라는 협약을 근거로 감면하도록 한 결정은 헌법 제59조에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국회의 입법권 침해 및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방세정 및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따라서, 비록 이건 ○○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국장)의 위법부당한 결정에 대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 취득세 등을 재부과·고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를 준수하고, 위법한 법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내용을 담은 안전자료를 작성하여 동위원회에 제출한 공무원의 직무태만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2) 지방세 과세대장 비치관리 부적정

지방세법 제196조(재산세과세대장 등의 비치)의 규정 등에 의거 재산세과세대장, 주민세대장,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등을 비치관리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시 ○구·□구·△구·◎◎구·◇◇구청은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과세대장

을 비치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수 기대장을 비치 관리하지 아니하는 등 지방 세과세대장 비치관리업무를 태만히 하였음.

(23)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부적정

지방세법 제51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서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게 되 어 있음에도 ○○광역시 ○구, □구, △구, ◎◎구, ◇◇구에서는 통과세건수 4,400,874 건중 689,584건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여 지방세법령을 위반하여 지방세정업무를 자 의적으로 처리하였음.

(24) 지방세 체납세징수 부적정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86조에서 정한 독촉(최고), 압류, 공매(경 매), 결손처분 등의 절차에 따라 체납세를 징수하거나 부득이 징수가 불가능 할 경우 에는 결손처분 조치를 하여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해야 함에도, ○○광역시 5개 구청 에서는 2002년 9월 1일 현재 총 체납자가 230,366명 체납건수 379,381건 체납액 64,574,946천원이 체납되어 있음.

이중 3회 이상 체납자 39,184명 199,746 건 43,552,482천원에 대한 조치 미흡, 10회 이상 체납자 5,442명 78,318건 17,137,037천 원에 대한 징수대책 미흡, 5천만원 이상 체 납자 66명 3,702건 8,611,667천원에 대한 징

수방안 미비 등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 등에서 규정한 관허사업제한, 조세범 형사고 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조치 등 체납처분 업무를 소홀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함으로써 지방세정 운영을 태만히 하였음.

(25)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시 채권 담보물징구 불이행

지방세법 제41조(징수유예 등의 요건) 내 지 제42조(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에 의 거 납세의무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를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는 징수유예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동법시행령 제32조(담보의 종류)의 규정 에 따라 그 유예하는 지방세액을 초과하는 담보물을 징구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로는 국채 또는 지방채,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등 과세권자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담보물 을 징구하여야 함에도, ○○광역시 △구청장 은 2001년도 △△건설(주)등 2개 법인의 주 민세 등 합계 119,534,880원을 담보물의 징 구없이 지방세법 제42조(징수유예 등에 관 한 담보)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수유예 조치 (체납처분 등의 유예)를 하였음.

(26)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발급업무 부적정

지방세법 제38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출 등)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민원 사무처리표의 통합고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발급지침』에 따라 지방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발급시 제3자가 발급 신청할 경우, 개인일 때는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확인 서류 징구,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등 필요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등기부등본, 위임받는자의 재직증명서, 신분확인증명서 사본 등을 징구하여야 함에도, ○○광역시 ○○구 등 5개 구청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처리함으로써 지방세법 제69조(비밀유지 등)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정보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였음.

(27) 법원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 대장 관리소홀

지방세무 부정방지 대책(1994. 9. 27)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법원경매시 교부청구로 법원에서 배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매일 일일결산 하도록 그 동안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음에도, ◎◎◎시장은 2000년 10월 23일부터 2002년 7월 22일까지 총 321건은 처리하면서 출장복명서만 결재를 득하고 법원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대장에는 징수담당, 담당과장이 일일결산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행정자치부의 법원배당금 취급요령(세정 13430- 767, 2000. 6. 20)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지방세 비리예방대책 추진을 소홀히 하였음.

(28) 지방세체납자 관허사업제한 미이행

지방세법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서는 동법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시의 경우 산업경제과 및 건설교통과에서는 세무과에서 관허사업제한 요구를 하였으나 2002년 7월 18일(감사일 현재)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도록 하고, 부서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재정 확충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29) 지방세 체납세 징수를 위해 필요한 법정조치 불이행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86조에서 정한 독촉(최고), 압류, 공매(경매), 결손처분 등의 절차에 따라 체납세를 징수하거나 부득이 징수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결손처분 조치를 하여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해야 함에도, △△시장은 2002년 7월 1일현재 총체납자가 36,107명 체납건수 80,370건 체납액 15,128,702천원이 체납되어 있고, 이중 관허사업제한 대상 317명 2,134건 341,193천원에 대한 조치 미이행.

10회 이상 체납자 853명 16,306건 4,105,948천원에 대한 징수대책 미수립, 지

방세 교부청구 미배당 고액채납자 8명 1,294건 1,582,876천원에 대한 징수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등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채납처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0) 지방세 징수유예시 채권담보물 징구 불이행

지방세법 제41조 내지 제42조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를 입었거나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는 징수유예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유예하는 지방세액을 초과하는 담보물을 징구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로는 국채 또는 지방채,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등 과세권자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담보물을 징구하여야 함에도, △△시장은 2000년도 ○○통운(주)의 정기분 종토세등 10,610,100원을 담보물의 징구없이 지방세법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수유예 조치를 하였음.

(31) 관내거주자에 대한 지방세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징수유예 부적정

지방세법 제42의2(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과 부과철회)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의 규정에 의거 송달불능으로 징수유예할 수 있는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에 있는 경

우에 그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여도 반송된 때, 납세의무자의 주소나 주소 또는 영업소나 사무소가 국외에 있음으로써 고지불능인 때,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징수유예를 할 수 있음에도, ○○시장은 2001년부터 2003년 9월말까지 지방세 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는 ○○시내 주소를 둔 납세자 ○○공업(주)(○○시 ○○구 ○○동 17-1번지, 취득세 3,096천원) 등 432건 총 2,048,959천원에 대해 징수유예 처리함으로써 102,446천원 상당의 수입을 지연케 하는 등 지방세 징수업무를 태만히 하였음.

○○시장은 2001. 11. 1부터 2003. 10. 21일까지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는 ○○시 관내 주소를 둔 납세자(주)○○석산(○○도 ○○시 ○○면 ○○리 524, 종합토지세 2,279천원)등 21건 총 40,409천원에 대해 징수유예 처리함으로써 2,020천원 상당의 수입을 감소케 하는 등 지방세 징수업무를 태만히 하였음.

2. 취득세

(1)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도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임대의무기

간내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시 ○○구와 ××구에서는 정○○외 1명이 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임대무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감면된 취득세 등 9,701,640원을 추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건축물 증축에 대한 취득세 과세누락

지방세법 제104조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증축한 자는 증축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징수를 하여야 함에도, ××시 ○○구에서는 황○○가 ××시 ○○구 △△동 181-19번지상 건축물을 1999. 6. 30일 증축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취득세(294,360원)를 보통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누락

지방세법 제107조 제6조 및 제18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재산세

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 세무과에서는 △△시 ××동 369 장○○ 등 22인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가설건축물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1,463,090원, 농특세 134,060원, 재산세 176,220원, 도시계획세 53,900원, 공동시설세 29,760원, 교육세 35,180원, 합계 1,892,210원을 부과누락한 사실이 있음.

(4) 토지수용 등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부적정

지방세법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은 대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보상받은 부동산(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15,327,100원 범위내에서 비과세하여야 했으나 실제 보상가액인 41,217,7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과세 함으로서 25,890,660원에 대한 취득세 등 1,025,480원을 부족 징수한 사실이 있음.

(5) 농지전용부담금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액 산정 누락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 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은 (주)○○통상의 2건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액 산정시 농지전용부담금을 과표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 2,019,770원을 과소부과한 사실이 있음.

(6) 유흥주점 영업소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누락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동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곱하여 농어촌특별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과 ○○시장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동일건물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여 영업을 해오고 있는데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41,844,000원을 추징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음.

(7) 운전학원의 미등록 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 누락

지방세법 제120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한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나, △△도 ○○시의 8개 시장·군수는 관내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전교습용 미등록차량 76대에 대한 취득세 등 8,998,850원을 보통징수하지 아니하였고, △△도 ○○군, ××시, □□시 ○○구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이 취득한 62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11,228,300원을 과세 누락하였음.

(8) 과점주주 과세자료 타 자치단체 전파 소홀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대상 물건이 다른 시·군에 있을 경우에는 그 과세대상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 과세대상물건 및 가격명세 기타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광역시에서는 2001년 8월 30일 ○○제관(주)에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면서 동법인이 ○○시 ××구, △△시, ○○도 ××군 등에 그 장부가액이 4,765백만원에 해당하는 토지 등이 있었음에도 해당 시·군·구에 현재까지 이를 통

보하지 아니하여 지방세정 운영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9) 고급 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 소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는 1000분의 20세율의 5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광역시 ×구와 ○○군에서는 ○○동 661-4 소재 건물 등 11건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동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47,249,960원을 추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0)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 부적절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과세표준은 취득자 및 등기·등록자의 신고 가액에 의하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광역시 ×구와 ○구에서는 최○○ 등 4인이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법인의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됨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11,118,890원을 과소 징수한 사실이 있음.

(11) 가설건축물에 대한 과세자료 관리소홀

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홍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광역시 ×구·○○군에서는 강○○ 등 83인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가설건축물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 38,024,880원을 부과누락한 사실이 있음.

(12) 국·공유지 매각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 미흡

□□도에서는 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한 취득세 과세자료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과세자료를 통수보 체계가 미흡.

(13) 창업중소기업 취득 사업용 재산 취득세 면제 부적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함.

그리고, 법인의 종업원이 분사(법인의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종전 법인의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사업분리의 요건) 제1호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분리계약이라 함은 유상으로 양도하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채권, 채무, 종업원, 부동산, 회계 등을 일괄 분리하도록 체결한 별도의 계약을 의미함.

그런데, ○○하이콘(주)는 2002. 3. 15. ○○산업개발(주)소유 ○○공장 사업용 재산 일체를 2,437,003,634원에 취득하였으나 ○○산업개발(주)와 별도의 사업분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광역시 ○○구청장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121,817,890원을 2002. 4. 2. 및 2002. 3. 9. 각각 과세면제함으로써 지방세 징수업무를 태만히 하였음.

(14) 신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과소신고분 추징누락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축물시공자의 제한)및 동법시행령 제36조(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시공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 시공자란에 법인명칭을 등재하여야 함.

그런데, ○○광역시 ○○구 ○○동 395-9번지 채○○은 ○○종합건설(주)를 시공자로 하여 2002. 01. 24. ○○광역시 ○○구 ○○동 849-3번지 상에 건축물 820.19㎡를 신축·취득하였으나 법인의 장부가액(도급금액: 33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144,082,37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4,522,980원을 2001. 01. 29. 신고납부함으로써 도급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가액(191,917,626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7,208,390원을 과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광역시 ○○구청장은 이를 추징하지 아니하고 과세누락시켜 지방세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15)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 누락분 추징

지방세법 제105조(납부의무자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신고납부)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한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규정에 의거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광역시 ○○구청장은 ○○광역시 ○구 ○○동 88-36번지 등에 축조신고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102,670원, 농특세 9,390원, 재산세 36,620원, 면허세 36,000원을 부과 누락함으로써 지방세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16)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누락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제8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시지가가 상향되었을 경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또는 신고납부 미이행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광역시 ○구청장은 문○○ 소유 ○○광역시 ○구 ○○동 737-2번지의 1필지를 지목변경하여 공시지가가 상승하였음에도, 취득세 등 772,470원을 부과누락시켜 지방세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또한, ○○광역시 ○○구청장은 김○○ 소유 ○○광역시 ○○구 ○○동 119-2 입야 539.0㎡외 1건이 지목변경 되어 공시지가가 상승하였음에도, 취득세 등 137,090원을 부과누락 시킴으로써 지방세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17) 보상금수령일로부터 1년초과 대체취득부동산 비과세 부적정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제1항에서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시 ○○구청장은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한 김○○의 경우,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2002. 4. 1. ○○광역시 ○○구 ○○동 277-1번지의 1필지 토지 566㎡ 및 건물 198.48㎡를 대체취득하였으나 보상금수령일(2001. 3. 19)로부터 1년이 경과된 2002. 4. 1. 대체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데도 취득세 등 402,390원을 2002. 4. 3. 비과세 처리하여 과세누락시킴으로써 지방세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18) 부재지주 대체취득부동산 취득세 등 비과세 부적정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제1항에서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할 경우 수용된 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김○○ 등 5인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보상금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광역시 ○구 ○○동 31-16번지 외 6필지 토지 2,270.77㎡ 및 건축물 661.05㎡를 대체취득 하였으나 수용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광역시 ○구청장·△구청장·◎구청장은 취득세 등을 비과세처리하여 과세 누락시킴으로써 지방세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19) 자경농민의 취득 농지에 대한 감면 부적정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장, ◇◇◇군수는 ○○자동차학원에서 취득한 자동차학원 교습 및 검정용 차량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 736,800원 가산세 147,36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음.

(20) 자동차학원 교습 및 검정용 차량 취득세 과세누락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21조 제2항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군수는 ○○자동차학원에서 취득한 자동차학원 교습 및 검정용 차량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 736,800원 가산세 147,36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음.

(21) 자동차구조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누락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에 대한 원동기·정원·적재정량 또는 차체가 각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장은 김○○외 3인이 자동차 구조변경을 하고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21조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취득세 570,000원, 가산세 114,0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음. ☹